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) 출연 대상 :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
나) 출연 필요성

(1)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

(2)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

(3)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,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

▸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, 2023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의결

다) 2023년 예산액

(1) 문화재단 총 예산액 : 금8,431,227천원

(2) 출연금 요구액 : 금7,209,614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

2) 주요내용

○ 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8조제4항제5호)

다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상위법령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